

[사 건 명] 행심 2019 - 91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6.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급교체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2019. 6.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6. 7.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서,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2019. 6.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조사과정 및 절차에 대한 안내조차 없이 “아이를 통해서 들으세요” 라는 행정 편의적 전달만을 해서 「행정절차법」의 목적인 국민의 행정 편의 도모 및 행정참여 취지에 반하는 절차운영을 하였고,

학폭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요건은 충족하나, 당시 학교폭력 관련 진술서를 받았던 전담기구 소속의 학생부장이 학폭위 위원으로 배석하였고, 학교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수위도 학폭위 위원으로 참석하였는바.

학생부장이 학폭위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공정성, 민주성, 독립성을 저해함으로 부적법할 것이며, 수위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한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결국 참여위원 7명 중 2명은 위원 자격이 없고 5명의 학부모로만 구성된 당시 학폭위는 그 전문성이 의심된다.

나.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이 사건의 발단시점인 2019. 4. 13.부터 2019. 5. 16. 학교체육대회 때까지도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진을 찍어 공유할 정도로 매우 두터운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피청구인 측은 이 사건의 전반적 맥락 파악과 관련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우관계, 사건의 발단조차도 파악하지 못하였고, 피해학생이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할 정도로 청구인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도 의심이 된다.

다.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영어 이니셜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피해학생이 언급되어 주목받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으며, 청구인이 영어 이니셜로 피해학생을 험담하는 대화를 주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당시 같이 있던 친구들도 많고 서로가 누군지 잘 몰랐기 때문에 영어 이니셜로 표현했을 뿐이며, 피해학생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29. 중간고사 중에 청구인이 시험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중간고사 첫 시험인 국어시험이 끝나고 피해학생과 답을 맞춰보는 과정에서 다음 시험(과학, 역사)도 같이 답을 맞춰보자고 말 한 것뿐이다.

마.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한 것은 피해학생이 걱정되어 안부를 물었던 것이고, 학폭위 질의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을 ‘무리’ 라고 지칭하여 마치 일진학생이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것처럼 왜곡 가해자로 낙인찍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O학년 ‘무리’ 를 선도조치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7호(학급교체) 처분을 했고, 청구인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까지 이수하라는 처분까지도 결정한 바,

이번 사건의 원인은 학교폭력인지도 의심될 정도로 매우 경미한 사안임에도 피해학생의 악의적 신고와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청구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심히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담기구에서는 학폭위의 조치 확정 전까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대신 ‘관련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가이드북 지침에 따라 절차진행을 했고, 사안내용을 보호자에게 통보, 관련학생 조사, 사실 확인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가감 없이 학폭위에 보고하였으며,

학폭위 위원 9명(교사 2명, 전문가위원 2명, 학부모위원 5명)은 절차대로 구성되었고 교육청의 연수를 모두 이수하였으며, 청구인이 학폭위에서 교원위원 1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여 그 해당위원은 스스로 회피하여 청구인에 대한 질의와 학폭위 의결에서 제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5. 16. 스포츠의 날 있었던 상호작용이 매우 두터운 관계를 보여준다고 말하나, 피해학생은 2019. 5. 15. 의료기관을 찾아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약물진료 및 상담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6개월 이상의 상담 및 진료가 필요함을 진단받았다.

다. 청구인이 같은 반 피해학생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 강요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피해학생의 진술과 청구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이 되었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무리’라는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사람이나 짐승, 사물 따위가 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관련학생 7명 중 청구인을 포함한 2명만 학교폭력 가해가 인정되

었다.

라. 청구인이 시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고 답을 알려달라고 하였음이 학폭위에서 청구인과 피해학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마.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3점), 지속성(3점), 고의성(3점), 가해학생의 반성정도(2점), 화해정도(2점)로 각 판정하여 총 13점이 산출되었고,

여러 사정을 참작 조치에 대한 가중 또는 경감을 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학급교체 조치를 결정하였고, 청구인 및 보호자에게 부과된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은 가이드북에서 정한 기준의 최소 시간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2. 판 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각 제출자료, 청구인과 피해학생, 관련학생들의 각 자술서,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각 학폭위에서의 진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대한 각 구술심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교우관계를 유지하며 SNS 단체방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2019. 4. 초경 관련학생 이\*\*이 피해학생이 장\*\*에게 ‘(단체방) 관련 학생들이 장\*\*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 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실을 관련학생들에게 전하여, 관련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학생이 그 일에 대해 관련학생들에게 사과했지만 이\*\*은 피해학생에게 단체방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했다.
- 2019. 4. 말경 청구인과 관련학생들은 피해학생과 같이 하교하던 길에, SNS 단체방에서 있었던 일을 이니셜 A(피해학생), B, C로 만들어 피해학생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피해학생이 이니셜 A, B, C 중 A가 자신임을 알고 단체방을 탈퇴하였다.
- 2019. 4. 말 청구인은 중간고사 국어시험이 끝난 후 피해학생과 답을 맞춰보는 과정에 다음시험(과학, 역사)에 손가락이나 기침소리로 답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 피해학생은 급성스트레스 장애로 2019. 5. 15. 정신과에서 6개월 이상 상

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9. 5. 20 청구인 등을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피해학생에게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1) 학폭위 위원 구성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 전담기구 조사과정 및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 수위와 학생들에게 직접 진술을 받은 학생부장 선생님이 학폭위 위원으로 참석한 위법이 있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전담기구에서는 가이드북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사안내용을 보호자에게 통보, 관련학생 조사, 사실 확인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가감 없이 자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학교 수위가 학폭위 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하나, 그 위원은 외부 전문가위원으로, 위 위원은 \*\*경찰관을 퇴직한 후 학교\*\*\*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로 학폭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7호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하여 학폭위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학폭위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존재하고, 학폭위 위원의 발언내용을 비밀로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위원의 성명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생활부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상담하고 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학폭위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생활부장은 학폭위 의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구조에 비추어 학폭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학폭위 위원으로 참여한 점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학폭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학폭위 재적위원 9명 중 생활부장을 포함한 위원 8명이 참석하였고, 청구인 측이 위원 1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여, 그 위원이 회피해서 출석 위원은 7명이 되었는바,

생활부장을 제외하고도 출석위원은 6명으로 재적위원 9명의 과반수가 충족되어서 나머지 의원들로 학폭위 개최가 가능했던 사안이고, 생활부장이 학폭위 심의를 주도하며 공정한 심의를 해하고 피해자 측만 대변하였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부장이 학폭위 위원으로 참여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만 그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이 사건의 발단인 2019. 4. 13.부터 2019. 5. 16. 학교체육대회 때까지 매우 두터운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청구



인 측은 이러한 기본적인 교우관계와 사건의 발단조차 파악하지 못하였고, 피해학생이 제출된 정신과 진단서와 같은 피해를 받았는지도 의심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에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사과하고 내용이나 어린 이날 선물로 렌즈를 준 사실, 2019. 5. 16. 학교 체육대회 날 사진을 찍은 사진을 공유한 내용들 등이 나타나 있으나, 피해학생은 단체방을 탈퇴하지 않기 위해 사과글을 보내고, ABC 이니셜에 의한 놀림사건 후 어쩔 수 없이 탈퇴했지만 단체방 관련학생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청구인에게 페이스북 상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라고 하고, 피해학생은 의료기관을 찾아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약물진료 및 상담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6개월 이상의 상담 및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영어 이니셜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피해학생이 언급되어 주목받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고, 당시 친구들도 많고 서로가 누군지 잘 몰랐기 때문에 영어 이니셜로 표현했을 뿐 피해학생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피해학생 앞에서 청구인이 이니셜 A, B, C를 사용 단체방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험담을 한 행위는 언어폭력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단체방도 탈퇴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중간고사 시험 중 피해학생에게 단지 답을 맞춰보자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학생은 청구인이 시험시간에 기침소리나 손동작으로 답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하고, 청구인도 학폭위에서 시험시간에 기침소리나 손동작으로 답을 알려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번 사건의 원인은 학교폭력인지 의심될 정도로 매우 경미한 사안임에도 피해학생이 악의적 신고를 했고, 피청구인의 학폭위에서는 질의과정에서 관련학생들을 ‘무리’ 라고 지칭하여 마치 일진학생이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것처럼 왜곡해서 가해자로 낙인찍고, O학년 ‘무리’ 를 선도조치하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을 한 것이고 그로인해 청구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학폭위에서는 조사된 내용과 제출자료, 질의를 통해서 청구인이 이니셜 A, B, C를 만들어 피해학생을 헐뜯고, 중간고사 중 피해학생에게 손가락이나 기침소리로 답을 알려달라고 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의결하였고,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3점), 지속성(3점), 고의성(3점), 가해학생의 반성정도(2점), 화해정도(2점)로 각 판정해서 총 13점이 산출되었으며,

피해학생이 청구인과 같은 학급이어서 힘들다고 말하는 점, 청구인이 학폭위 개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미지 글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추가로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경감을 하지 않고 위 점수에 해당하는 학급교체조치를 결정하였고, 청구인 및 보호자에게 부과된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은 가이드북에서 정한 기준의 최소한 시간이며, 청구인은 이미 O반에서 O반으로 학급교체 조치가 된 상태이고, 청구인 측은 청구인이 다시 O반으로 돌아가길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

술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폭위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었지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이유가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만큼,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